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제정 : 2009. 4. 3.

1차 개정(부분개정) : 2010. 8. 1.

2차 개정(전면개정) : 2012. 3. 1.

3차 개정(부분개정) : 2014. 1. 1.

4차 개정(부분개정) : 2015. 1. 1.

5차 개정(부분개정) : 2017. 1. 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쟁관련 법률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경쟁당국에서 소관하는 모든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말한다.
2. 공정거래 주관부서라 함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경쟁당국이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관련 법률을 소관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4. 임직원은 당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당사의 관리·책임 아래 근무하고 있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제4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면】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원 또는 공정거래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의 장으로 선임한다.
- ② 위 1항의 자율준수관리자 결원 시 이사회에서 재선임 한다.
- ③ 위 2항의 선임의 효력은 새로운 자율준수관리자가 취임한 때로 소급한다.

제5조 【권한과 의무】

-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2.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 요구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권
 4. 징계절차를 위한 임시자율준수위원회의 개최 요구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제6조【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효율적인 CP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총괄
2.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
3. 연간 4회 이상 공정거래 자율점검의 시행
4. 공정거래 자율점검 결과 자율준수위원회보고 및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위기관리위원회 상정
5.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 요구
6. 연간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의 시행
7. CP운영 현황에 대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 보고
8. 대표이사의 개최명령에 따른 자율준수위원회의 진행
9. 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절차를 위한 임시 자율준수위원회의 개최 요구
10. 경쟁당국과의 정보교환·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
11.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 자율준수위원회

제7조 【자율준수위원회 구성】

- ① 이사회는 CP운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자율준수위원회는 이사회의 인사명령에 따라 구성되며, 구성원의 결원 시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 ③ 이사회는 자율준수위원회 구성원 중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보직자를 위원으로, 주요 업무 담당자를 리더로 선임한다.

제8조 【역할】

자율준수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중요사항 심의 및 자율준수관리자 자문
2. 경쟁관련 법률 위반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3. 자율준수위원회에 상정된 주요안건의 논의 및 의결
4. 자율준수실무협의회 실무자 선정

제3절 자율준수실무협의회

제9조【자율준수실무협의회 임면】

- ① 자율준수실무협의회 실무자는 해당 사업 분야의 자율준수위원이 지정하는 1인으로 하며, 정기 협의회는 분기 1회 실시한다.
- ② 자율준수실무협의회의 총괄 운영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며, 구체적인 운영 및 실행·회의체 소집은 CP 담당자가 진행한다.
- ③ 자율준수실무협의회 실무자는 주요 직무 변경 또는 퇴사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즉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율준수위원은 해당 분야의 구성원을 재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율준수실무협의회의 기능 및 실무자의 역할】

- ① 자율준수협의회 실무자는 각 사업부문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을 숙지하고 각 사업부문에 전파하여 풀무원건강생활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풍토를 확립하고 전파해나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 ② 자율준수실무협의회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공유 및 협의한다.
 1. 각 사업부문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계획·협의 및 조정
 2. 각 사업부문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사항 및 관련 법령 정보의 공유

3. 기타 각 사업부문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제4절 공정거래 주관부서

제11조 【공정거래 주관부서의 구성】

공정거래 주관부서는 경쟁관련 법률의 위반위험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중에서 인사명령에 따라 구성하며,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제반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12조 【직무】

공정거래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서업무와 관련한 경쟁법 관련 법규의 변경에 대응하여 내부규정의 정비
2.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의 관리
3. 임직원 또는 파트너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의 시행
4. 공정거래 자율점검의 시행
5. 사전업무협의제의 시행
6. 공정거래 인식도 조사의 수행
7. 공정거래 관련문건의 기록, 유지
8.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절 대표이사

제13조 【대표이사의 지원】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14조 【인사상 불이익 부과 금지】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관리자와 공정거래 주관부서가 직무수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제1절 자율준수의지 선언

제15조 【선언 목적】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경쟁법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한다.

제16조 【선언 방법】

- ①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되어 회사의 임직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 ② 본조 제 1항의 문서는 회사의 임직원은 물론 거래 파트너와 일반 대중에게도 공지한다.

제2절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

제17조【자율준수 편람의 제작과 배포】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의 자율준수를 위한 매뉴얼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한다.
- ③ 자율준수편람은 필요시 언제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책자로 제작하여 주요부서에 비치하며 사내 전산망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게시한다.

제18조 【자율준수편람의 개정】

자율준수편람은 연 1회 개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법령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결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개정할 수 있다.

제3절 모니터링 시스템

제19조 【모니터링의 시행】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경쟁법 위반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대표이사 및 자율준수위원회에 보고한다.

1. 사전체크리스트에 의한 경쟁법 위반여부 점검
2. 공정거래 주관부서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각종 점검 자료의 검토 및 확인
3. 내부제보시스템에 의하여 신고 된 사항의 검토

제20조 【모니터링 결과 보고】

공정거래 주관부서는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반영결과 등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자율준수관리자는 해당 내용을 대표이사 및 자율준수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1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내부제보시스템을 운영한다.
- ② 내부제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내용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공정거래 주관부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보 내용이 중대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대표이사에게 사건처리를 위한 임시자율준수위원회의 개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내부제보자는 제보로 인한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④ 본 조에 따라 별도 정한 내부제보 및 내부제보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풀무원 바른마음경영 신고보상 운영 지침'과 상반되는 경우 전사규정을 우선한다.

제4절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22조 【교육 프로그램의 수립】

- ① 공정거래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연간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한다.
- ② 연간 교육프로그램은 교육 대상자와 교육 과정에 따라 별도로 수립한다.

제23조 【교육의 시행】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간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한다.
 1. 연간 1회 전 조직원 대상 공정거래 전문가 교육
 2. 연간 2회 신규 입사자 대상 공정거래 교육
 3. 법위반가능부서 조직원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세미나
 4. 연간 1회 대표이사 외부교육
 5. 연간 1회 파트너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세미나
 6. 자율준수실무협의회 실무자 연간 1회 공정거래 교육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오프라인 교육과 더불어 온라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 후 설문을 통한 교육 효과성 평가를 시행하며, 도출된 결과는 차기 교육에 반영한다.

제24조 【교육의 내용】

교육의 내용은 경쟁법 주요사항 및 업무수행상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법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할 시 자율준수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제5절 기타

제25조 【인센티브 시스템】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되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내부제보자
2. 공정거래 교육이수 우수자
3.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제안자
4.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하는 자
5. 공정거래 뉴스레터 퀴즈 응모자 중 공정거래주관부서에 의해 추천된 자

② 본조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인센티브 부여안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공정거래 주관부서에서 수립한다.

제26조 【인사제재】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관련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인사제재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위 2항에 따라 별도 정한 인사제재의 내용이 '풀무원 바른마음 운영규정' '풀무원 바른마음경영 조직원 행동기준'과 상반되는 경우 전사규정을 우선한다.

제27조 【공정거래 자율준수 풍토의 확산】

자율준수관리자는 사내 공정거래문화의 확립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28조 【운영상황의 공시】

공정거래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사내 인트라넷, 신문광고, 파트너이용 인트라넷 등 내·외부에 공시한다.

제29조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성과 평가】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연2회 이상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성과 평가를 공정거래 주관부서에 지시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 및 자율준수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성과 평가는 공정거래 주관부서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외부기관의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 【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공정거래 주관부서에 지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 【기록관리】

본 규정과 관련한 모든 기록은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 【개정】

- ① 본 규정을 포함하여 CP관련 제규정에 제·개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1. CP관련 제규정의 제·개정은 자율준수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발의 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발의한다.
 2. 자율준수위원회는 제안에 대해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위원회 전체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자율준수위원회를 통과한 제·개정 규정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한다.
 4. CP관련 제규정은 사규의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상기 1항에 따라 최종 승인된 규정에 대해 자율준수관리자는 즉시 이를 공포하도록 한다.

- ③ 상기 2항에 따라 공포된 규정은 즉시 발효된다.
- ④ CP관련 제규정의 제·개정 절차는 [별표1. CP운영규정 개정절차]에 따른다.

【부칙】

- 1. 본 규정은 인트라넷 CP커뮤니티에 게시하여 당사의 전 임직원과 공유한다.
- 2. 본 규정은 200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 3. 본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 4.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5.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6.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7.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